

이렇게 들었다

선린우호

“서로 믿고 화합해야 친구요 벗”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두 나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정립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안보 협의회의 정례화와 대북문제 공조 체계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하니 21세기를 맞는 시점에서 이같은 선택은 현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일본의 과거사 반성이 일회성 선언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위안부 문제 등 일본의 변화와 개선이 뒤따라야만 진정한 관계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 우리 역시 일본이 마음을 열기 시작한 이상 좋은 이웃으로 생각하고 교류·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용서하되 결코 잊지는 말아야 할 민족의 아픔. 이 아픔은 상호간의 굳건한 믿음이 생길 때 치유될 수 있다. 양국의 선린우호를 기대하며 이에 대한 부처님 말씀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 햇볕을 들고 나온 초인은 사람의 형상을 띠고 나타나서, 지혜와 자비심으로 이 세상을 밝혀 주시는 부처님이다. 그 빛 속에서 인간은 제 자신과 남들을 발견하고 인류애와 화합하는 정신을 깨우친다. 많은 사람이 한데 모여 살아도 서로 잘 이해하고 동정하는 마음이 없으면 진정한 우정이 생기지 않는다. 진정한 생활 공동체에는 그 자체를 밝혀주는 신념과 지혜가 있어서 사람들이 서로 믿고 화합한다. 진실한 화합이야말로 진정한 생활공동체나 한 조직체의 생명이다. (대반열반경)

■ 세간에 이로운 일이 있을 때 서로 왕래하면서 변함없이 일깨워주는 것을 친구라 한다. 만약 어려운 당한 것을 보고 서로 버리고 떠나지 않고 뜻과 행동을 같이 하는 것을 친구라 한다. 부귀할 때는 누구인을 친구나 벗이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불본행집경)

■ 벗 사이에는 세 가지 긴요한 일이 있다. 첫째는 과실을 보면 서로 깨우쳐 충고

함이고, 둘째는 공덕이 되는 일을 보면 같이 따라서 기뻐함이고, 셋째는 불행에 있을 때 서로 버리지 않음이다. (인과경)

■ 자타가 서로 권면(勸勉)해야 모든 악에서 떠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재앙으로부터 구호하는 사람이야말로 친구이며, 늘 이익(利便)에 관계되는 말만을 역설해서, 자타가 안일에 빠지고 온갖 악을 즐겨 행하도록 하는 것은 진정한 벗이라 할 수 없다. (제법집요경)

■ 좋은 벗이란 고락을 함께 하고 이익을 분배하고 상대방에게 직업을 갖게 하고 늘 어진 생각을 함이다. 나쁜 벗에도 네 가지가 있으니 상대의 물질을 빼앗음이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체면만을 좋아하는 것이고, 사탄 가르침을 주는 것이니라. (선생지경)

■ 믿음에 세 가지 중요성이 있다. 첫째는 제 과오를 뉘우치기, 둘째는 남의 미덕을 보고 칭송하면서 기뻐하기, 셋째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을 모시기다. 믿는 사람들

은 항상 세 가지 특성을 닦아야 한다. 자신이 실수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재빨리 알아차려서 참회하고, 남의 미덕과 선행을 보면 충정으로 칭찬해서 그 명예를 높여 주며, 항상 부처님과 같이 살면서 부처님과 함께 행동하기를 기원해야 한다. (공금명경)

■ 훌륭한 벗에 일곱 가지가 있으니 고난을 만나서 버리지 않고, 가난하다고 버리지 않고, 자신의 어려운 일을 상의하고, 서로 도와주고, 하기 어려운 일을 해 주고, 참기 어려운 것을 참는 것이니라. (사본율)

■ 항상 우정이 끊어질까 염려하여 아침 하면서도 벗의 결점만을 보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다.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기듯이 그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그 사이가 멀어지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친구다. (수타니파티)

■ 게으름을 괴울 때 깨우쳐 주고, 일을 방해하거나 의심하지 않으며, 허물을 보아도 고꾸라리를 잡으려 애쓰지 않는다. (별역잡아함경)

김민수교수의 백양사일기 (45.11~12)

조선어학회 한글강습 파견강사로, 1945년 11월12일~12월11일 백양사에 머물며 '한글문화보급회 백양사문화회'를 이끈 김민수 교수(고려대 명예교수, 본지 193호 1, 7면 보도)의 백양사 일기-나의 마음을 연재한다. 한 달 동안 백양사에서 열린 한글강습회의 진행상황과 해방직후 백양사의 모습, 대중스님들의 생활과 사회 분위기 등을 엿볼 수 있다. (편집자 주)

해방의 환희, 국어회복 문학의 전당 백양사
- 1945년 11월12일(월) - 1945년 11월14일(수)

1945년 11월12일 월요일 아침 8시45분 서울역을 출발했다. 우리 민족 최대의 기쁨, 해방을 맞이하고 처음 떠난 여행길이다. 기차에서 내내 보이는 환한 들녘, 논마다 쌓여 있는 벼가리. 과연 곡창의 나라 조선이로구나! 갈망하던 해방과 함께 찾아온 종년. 나도 모르게 기쁨에 설레는 심금을 어찌지 못하고, 이 길을 왜 가고 있는가 다시 돌아보는 생각에 잠겼다. 9월11일 조선어학회 제1회 국어강습회 사법부를 수강하고 9월28일 8대의 국어강사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후, 학회 교양부 이희승(李熙昇) 간사 지시로 백양사에 파견된 것이다.

신비의 당풍기

- 1945년 11월13일(화)

호남선 사거리역(지금의 백양사역)에서 내려, 평경한 길을 따라 30리 가량 풍속을 향하여 걸기 시작하였다. 뒤엎어짐 민나는 마음마다 해방과 독립에 이바지 하였다는 기치(旗幟)가 자꾸 어른거린다. 청년단체의 경고문, 문화단체의 포스터, 선전비라 '우리 모두 힘을 합치자!' 민족의 반역자를 말살하자! 등도 보인다. 다 좋은 문구들이다. 역에서 20리쯤 가서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가 나오고, 여기서 큰길을 버리고 북쪽 산길로 발길을 돌렸다. 한 5리쯤 지났을 때 어느덧 먼곳이 어두워 보이기 시작하여 저녁때를 느끼게 되었다. 왼쪽에 너더덜 채 집이 보이고, 몇 발자국 지나자 오른쪽에도 집이 몇 채 있다. 이 산중에 웬 양옥인가? 하얀 글씨로 백양관(白羊館)이라 써 붙였고, 오른쪽에도 이처럼 깨끗한 집이 마주 보고 있다. 약 1백m쯤 가면 절이라고 하는데, 앞 길가에 단풍나무가 나란히 서 있다. 양쪽 그 나무 밑에 들뜬 갈래가 있는 선혈같이 붉은 단풍잎. 붉은 잎이 광채를 뽐내는 사방은 은빛이 비쳐 환하게 물린 가도(街道)가 아련히 뻗어 있다. 이윽고 극락교(極樂橋)를 건너 사천왕문(四天王門)을 들어섰다.

수강생 명단

- ▶ 고등부: △백양사-정문학, 국덕신 이만홍, 조종모 △영광 불감사-이광운 △순창 구암사-김홍기 △정읍 내장사-조기옥 △담양 용흥사-차정목 △장성 사거리-김우홍 김택홍 △장성 종령리-김동철 △장성 약수리-임정태
- ▶ 보통부: △백양사-한정열 김남중 전복신 이상호 김행심 박해경 강경화 임병욱 △부안 개암사-허재근 이성기 김형범 △영광 불감사-강갑선 △고창 문수사-이범립 △고창 상원사-박영구 △순창 구암사-김홍운 △고창 소요사-고성훈 △장성 사거리-김규규 김홍구 △장성 약수리-김영진 김기주 김봉수 김정상 송옥선 △담양 가산리-김정재

독자의 소리

현 원장 중임 적법...소급적용 불가능

양영태 (변호사)



우리 헌법 제13조 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을 제한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사법(私法)의 일반원칙을 통하여 일반국민간의 관계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헌법의 해석에 관한 통설적 견해이다. 따라서 조계종 종헌 제53조 2항 역시 총무원장이 될 수 있는 권리를 소급적으로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헌법의 취지에 따라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인 장기집권의 방지라는 종헌 규정의 취지를 극단적으로 해석하여 현행 종헌이 시행되기 전의 역임 횡수도 포함시키는 것이 옳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전의 경우 현 총무원장이 과거에 총무원장으로 재직했던 것은 이미 20여년 전 불과 7개월여 정도의 기간이다. 그 당시의 총무원장 퇴임이 10·27 법안이라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의하여 불법적·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 총무원장을 다시 중임하게 한다고 하여 1인의 장기집권을 방지하려는 종헌의 개정 취지에 반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현 총무원장이 29대 총무원장에 취임하는 것은 현행 종헌에 비추어 적법한 것으로 사료된다.

중임은 평생 두번만 할수 있다는 뜻

이재훈 (변호사)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것은 '총무원장을 평생에 2번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총무원장으로서의 봉직기간이 며칠밖에 안된다고 하더라도 '총무원장'이라는 직책에 있었던 경우에는 1번만(4년 임기종료와 관계없이)을 더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해석하여야 합당하다. 2회 중임의 적용기준시기가 94년 종헌개정 이후인가, 최초 종헌 후 전체기간인가? 94년 종헌개정 당시의 대한불교조계종이 과거의 조계종으로부터 탈종하였거나 변경하였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조계종의 종종이라 총무원장을 한번 봉직하신 스님은 94년 종헌개정 이후에는 총무원장

에 다시 취임할 있는 기회가 1번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94년 개정종헌 제 53조 제2항의 개정 취지는 1인의 장기 집권을 막고, 94년 개정 전후에 관계없이 총무원장을 평생에 2번만 할 수 있게 하라고 하여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개정된 것이다. 지금 조계종내에서 재출마가능 여부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월주 총무원장 스님의 경우, 불교법안 당시의 총무원장 봉직이 인정된다면 다시 출마하는 것은 3선 취임이 되어 현재의 종헌에 위배된다고 인정된다.

사찰입구에서 받는 공원입장료 폐지해야

몇일 전 일간신문 독자란에 법주사(속리산)를 예로 들며 문화재 관람료와 공원입장료를 모두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내용이 실렸다. 이에 대해 결론부터 말하자면, 천년이 넘도록 사찰에서 지켜왔으며 사찰의 소유자인 속리산에 대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공원공단)에서 입장료를 징수함은 부당한 처사이다. 법주사 산문을 통과해 문장대, 천왕봉까지는 법주사 사찰립이다. 사찰과 그 권역을 찾아오

는 신도나 방문객에게 공원공단에 서 입장료를 징수할 권리가 있는 지 묻고 싶다. 공원공단측에서 주장하는 8부능선 이상의 산림을 보호한다는 명분이라면, 절 뒷편 등산로 입구에서 입장료를 징수해야 한다. 사찰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공원공단에서 통제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단순한 금전상의 문제가 아니다. 불교의 정부예속화를 초래하며, 더 나아가 사찰의 생명력을 목조르는 행위이다. 또한 불교의 자주성과 재산권을 완전히 도외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사찰 입구에서의 공원입장료 폐지가 시급히 요청된다. 지경(경북예전 장안사 스님)

백일동안 매일 천배씩 한 '나의 수행일기' 읽고 감동

나는 현대불교신문을 받아보면 제일 먼저 '나의 수행일기'란에 눈이 간다.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식층분자들의 진솔한 수행담을 통해 내 자신의 수행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읽은 것중 187호부터 3회에 걸쳐 실린 김병규 문화일보 논설위원님의 수행일기는 감명깊었

다. 그분의 철저한 신앙생활은 물론, 무엇보다도 천배씩 1백일동안 10만배를 했더니 정말 입이 딱 벌어진다. 티벳스님들이 출가하면 10만배를 한다는 얘기는 들었으나 우리나라에서 100일동안 10만배를 성취했다는 실화는 처음 대했기 때문이다. 곧바로 그분에게 전화를 드린 나는 9월 4일부터 10만배 기도에 들어갔다. 10월 24일까지 50일동안 10만배를 목표로 하루 2천 배씩 하고 있다. 내 10만배가 끝나면 아내가 10만배 기도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오는 29일에는 내가 관여하고 있는 재천부교기사회, 강천사

불교상담기관 상담자원봉사자 모집

자/아/성/숙/의/기/회/와/봉/사/의/즐/거/음/을/드/립/니/다.

- ▶ 교육일시 : 11월 4일~11월 27일(매주 월, 수, 금, 오후 2시~5시)
- ▶ 장 소 : 조계중사복지재단 강의실
- ▶ 교육비 : 5만원
- ▶ 주 최 : 구룡사, 봉은사, 능인선원, 서울자비의 전파
- ▶ 주 관 :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설 자비의 전파
- ▶ 후 원 : 조계종총무원 사회복지부, 조계중 사회복지재단
- ▶ 문의·접수 : 서울 자비의 전파 사무국(TEL:737-7378, 접수마감:11/2)

• 불교상담기관 연합 카운슬러대학 교육강의 일정 •

날 짜	교육 내용	강 사	비 고
11/4(수)	개강식/효과적인 인간관계	사무국/이재택	불교상담기관 대표자/좋은아버지되기 모임
11/6(금)	상담이란 무엇인가 인성검사(MMPI)	윤 호 균 황 신 정	카톨릭대학 심리학과 교수 자비의 전파 상담연구원
11/9(수)	아동 성폭행 그 대책 청소년 가출과 학교폭력	정 영 애 송길용	서울 여성의 전화 이사 대검찰청지녀학교인심하고 보내기운동본부 담당검사
11/11(수)	연령별 성(性)상담 중년부부의 갈등(외도, 폭력)	이 근 후	이화여대 신경정신과 교수
11/13(금)	이상심리(신경증, 정신장애) 현대인과 정신치료	전 현 수	전현수신경정신과 원장
11/16(월)	가정법률(이혼, 양육, 위자료청구) 재산법률(재산권, 상속, 기타)	강 정 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원
11/18(수)	부처님의 수행을 따라서 자비관법 수행법	정목스님	前 BBS 차관전선의를 진행
11/20(금)	한국경제의 현황과 실 질적자 현황과 그 대책	김 양 일 심철호	前 KBS 보도위원, BBS 보도국장 시장의전화 회장
11/23(월)	전화상담의 원리/전화상담의 기법	박 경 석	포항제철 상담실장
11/25(수)	상담사례 연구 심층, 음란전화 대처법	문 형 춘	서울시 청소년종합상담실 부장
11/26(목)	사이코드라마 관람	교육생	국립정신병원
11/27(금)	상담봉사와 불자의 자세 불교상담기관 협의회 발족식	진오스님 사무국	자비의전화 부회장
2차교육	자원봉사 신청자에 한해서 상담수퍼비전 교육	사무국	

第14回 不二賞 要綱

不二會에서는 韓國佛敎 中興의 先驅의 役軍이 될 참신한 젊은 일꾼을 育成함을 目的으로 研究·實踐 2개 분야에 걸쳐 탁월한 가능성을 보인 젊은 인재를 發掘 그들의 보다 알찬 發展向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本賞을 制定, 每年 1회 施行합니다.

1. 施賞分野
 - 가. 研究分野
 - ① 大學院 碩士課程修了 이상의 學歷者로서 大學에서 時間講師 以上, 助敎授 以下の 職에 있는 者로서
 - ② 最近 2年 동안의 業績中 佛敎學(佛敎을 中心으로 하는 歷史, 哲學, 文學, 藝術, 比較思想, 其他) 關係의 탁월한 研究成果를 올린 40세 前後인 者.
 - 나. 實踐分野
 - ① 佛敎에 入門하여 7年이 經過한 佛子로서
 - ② 信行과 布敎가 他的 模範이 되는 者로서 연령제한 없음.
2. 施賞規模 : 各 分野別 1名 500萬원
3. 候補者 提出書類
 - 가. 候補者 推薦 카드(本會 所定樣式 : 別添)
 - 나. 自筆 履歷書(寫眞 添附)
 - 다. 學歷 證明書
 - 라. 經歷 證明書
 - 마. 業績을 證明하는 研究物 또는 活動內譯書, 成績 證明書
 - 바. 具足戒, 受戒 證明書
 - 사. 推薦書 3通(總長, 大學院長, 其他 機關 및 團體의 長)
4. 接受啓勸 : 1998年 11月 30日까지
5. 審査 : 不二賞 審査委員會
6. 受賞者 發表 : 佛敎界 言論媒體
7. 接受處 및 問議 : 不二賞 審査委員會
서울特別市 江南區 開浦3洞 186-1 開浦B/D 6層
☎ (02)3411-6167~8, FAX : (02)3411-6169

不二會